의 안 번 호	제 2020 - 2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2. 17. (제 2 회)

의결사항

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'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'(세부사업) 신설 -

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

제 출 자	위원장 박 능 후 (보건복지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2. 17.

1. 의결주문

○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및 지원인력의 보수 및 근무 장소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○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개정('20.1.29. 시행)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을 둠에 따라 상근전문위원(3인) 보수, 지원인력(6인) 보수 및 근무장소 확보 위해 13억25백만원 필요

- '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성 강화'(세부사업)을 신설하여 필요 소요 13억25백만원 반영

3. 주요내용

○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관련 13억25백만원 편성(순증)

-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13억25백만원 감액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재정법 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, 국민연금법 제103조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,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

다. 관계부처협의 :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협의 완료

5.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○ 원안 심의

< 별 지 >

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'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'(세부사업) 신설 -

2020. 2. 17.

보건복지부

1. 사업 개요

□ **(사업목적)**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·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을 두어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□ **(사업내용)** 상근전문위원 및 지원인력의 보수, 근무장소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지원

□ **(사업시행방법)** 보건복지부 직접수행

□ **(사업근거)** 국민연금법 제103조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,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(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2. 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 내역

□ **변경사유**

○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30371호, ’20.1.29. 시행)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른 필요 예산 확보

□ **변경내역**

○ **(증액)**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**13억25백만원** (순증)

○ **(감액)**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**13억25백만원**

3.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년 예산 변경			주요변경 내역
	계획현액	변경요구	증감	
합 계	**132,918,864**	**132,918,864**	**-**	
[7300]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	529,786	529,786		
[7400]국민연금운영(여유자금운영위탁 등)	**277,805**	**279130**	**+1,325**	
[7431]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	62,831	62,831	-	
[7432]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	66,487	67,812	+1,325	
[431]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	1,518	1,518	-	
[432]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(정보화)	7,284	7,284	-	
[440]노후준비서비스	1,842	1,842	-	
[441]실업크레딧 지원 사업	28,496	28,496	-	
[442]국민연금 조사연구	2,676	2,676	-	
[446]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	1,011	1,011	-	
[449]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성 강화	-	1,325	+1,325	
[110]인건비	-	632	+632	
[03]상용임금	-	632	+632	
[210]운영비	-	355	+355	
[01]일반수용비	-	76	+76	
[02]공공요금 및 제세	-	32	+32	
[07]임차료	-	244	+244	
[16]기타운영비	-	3	+3	
[220]여비	-	25	+25	
[01]국내여비	-	25	+25	
[240]업무추진비	-	23	+23	
[01]사업추진비	-	23	+23	
[320]민간이전	-	119	+119	
[09]고용부담금	-	119	+119	
[420]건설비	-	94	+94	
[02]설계비	-	10	+10	
[03]공사비	-	84	+84	
[430]유형자산	-	76	+76	
[01]자산취득비	-	76	+76	
[452]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	23,660	23,660	-	
[7433]국민연금 복지사업	63,665	63,665	-	
[7478]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	84,822	84,822	-	
[7600]국민연금운영(급여지급)	26,603,440	26,603,440	-	
[9700]여유자금운용	105,507,833	105,506,508	△1,325	
[9720]여유자금운용(국민연금기금)	105,507,833	105,506,508	△1,325	
[972]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	2,535,140	2,533,815	△1,325	
[470]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	2,535,140	2,533,815	△1,325	
[02]통화금융기관예치금	2,535,140	2,533,815	△1,325	
[974]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	24,014,671	24,014,671	-	
[976]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	46,361,080	46,361,080	-	
[977]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	20,779,999	20,779,999	-	
[978]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	11,816,943	11,816,943	-	

소요예산 산출근거

○ (인건비) **상근전문위원 3인 + 지원인력 6명**에 대한 **인건비 632백만원 순증**

- (보수기준) **상근전문위원 보수는 1인당 연 117백만원, 지원인력은 1인당 연 65백만원**으로 반영

  * 2020년 실근무기간(10개월 감안)

  * 상근전문위원 보수의 경우 정부 소속 위원회 상임위원 등 유사사례* 보수기준 참조

    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(상근, 위원 겸임) 연 117백만원, 하자분쟁심의조정위원회(국토부) 위원장 연 114백만원

  * 지원인력의 경우 연구원 박사급 보수수준 참조

○ (**운영비**) 상근전문위원 및 지원인력 근무에 필요한 **소요비용, 사무실 및 사무기기 임차료 등 355백만원 반영**

- (사무실 임차료)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**건물 0.5개층* 임차료 기준**(236백만원)으로 반영

  * 상근전문위원 등 근무공간 + 대회의실, 소회의실 등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간 포함

○ (**민간이전**) 상근전문위원 및 지원인력 **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 충당금** 등 **119백만원 반영**

○ (**건설비 등**) 사무공간 설계비 및 공사비 **94백만원**, 사무용 가구·집기 구입 등 **76백만원 반영**

참고 1 **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논의사항**

1 2019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('19.10.11.)

- [보고19-23]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

<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>

○ (**전문성 보완**) 자격요건* 갖춘 상근전문위원 3인 임명

* 금융·경제·자산운용·법률·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
-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(근로자·사용자·지역가입자)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,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(1차에 한해 연임 가능)

○ (**전문위원회 법제화**)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

- ①투자정책: 상근전문위원 3명+ 기금위 위원 3명*+ 외부 전문가 3명

*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(근로자·사용자·지역가입자) 대표 중 각1명

- ② 위험관리·성과평가 : 상동
- ③ 수탁자책임: 상근전문위원 3명+ 외부 전문가 6명

○ **(지원인력 확충)**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(민간전문가) 확충

○ **(안건 부의권)** 기금위 위원 1/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

2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('20.2.5.)

- [의결20-1]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(안)

<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(안) 주요 내용 >

○ (**기금위 안건 구체화**)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,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

- 기금위 위원 **1/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**은 위원회 공식 상정

○ (**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**) 3개 전문위원회(투자정책, 수탁자책임, 위험관리·성과보상)는 각각 **9명의 위원으로 구성**

- 3명은 **상근하는 전문위원**으로 자격요건*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(근로자·사용자·지역가입자) 추천받아 **유형별 1명 위촉**, **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**하며 **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**

* 금융·경제·자산운용·법률·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
- ① 투자정책, 위험관리·성과보상: 상근전문위원 3명+ 기금위 위원 3명*+ 외부 전문가** 3명

*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(근로자·사용자·지역가입자) 대표 중 각1명씩 참여

**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

- ② 수탁자책임: 상근전문위원 3명+ 외부 전문가* 6명

*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(근로자·사용자·지역가입자)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

○ (**책임성 강화**) **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·의무** 부과 (위반 시 해촉)

참고 2 **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규정**

□ 국가재정법 제70조 [기금운용계획의 변경]

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**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**
② **기금관리주체**(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)**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·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**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>
③ **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** <개정 2008.12.31.>
1. 별표 3에 규정된 **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(→ 국민연금기금 해당)**

□ 국가재정법 제74조 [기금운용심의회]

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**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**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>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.>
1.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
2.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
→ (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규정)
⑤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,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□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(기금운용계획 변경)

◇ **기재부 협의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사항 (주요항목의 20% 이내 변경)**
- ⑤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신설(세항, 세세항 및 세세항 내에서의 내역사업)하고자 하는 경우